

■ 개인형퇴직연금(기업형) 운용관리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(안)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<p>개인형퇴직연금(기업형) 운용관리계약서</p> <p>제1조~제15조 (생 략)</p> <p>제16조 (담보제공 및 중도인출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가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 단, 제4호의 2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담보제공만 가능합니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1의2.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「민법」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.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(이하 "사업"이라 한다)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.</p> <p>2~4의2. (생 략)</p> <p>5. <u>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</u></p> <p>6. (신 설)</p> <p>7. (신 설)</p> <p>③ (생 략)</p> <p>제17조~제31조 (생 략)</p> <p>부 칙</p> <p>제1조 (시행일)</p> <p>이 계약서는 2020년 4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.</p>	<p>개인형퇴직연금(기업형) 운용관리계약서</p> <p>제1조~제15조 (좌 동)</p> <p>제16조 (담보제공 및 중도인출)</p> <p>① (좌 동)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가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 단, <u>제4호의2와 제5호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담보제공만 가능하며, 제7호의 경우에는 중도인출만 가능합니다.</u></p> <p>1. (좌 동)</p> <p>1의2.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「민법」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.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(이하 "사업"이라 <u>합니</u>다)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.</p> <p>2~4의2. (좌 동)</p> <p>5. <u>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가입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</u></p> <p>6. <u>재난(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합니다)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</u></p> <p>7. <u>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</u></p> <p>③ (좌 동)</p> <p>제17조~제31조 (좌 동)</p> <p>부 칙</p> <p>제1조 (시행일)</p> <p>이 계약서는 <u>2020년 12월 24일</u>부터 시행합니다.</p>

제2조 (생 략)

(별지1) 개인형퇴직연금(기업형) 운용관리계약  
부속협정서

제1조~제2조 (생 략)

제3조 (수수료의 징수)

① 제2조제1호의 운용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.

1~4. (생 략)

4의2.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최초로 계약한 날(합병·분사·영업양도의 경우 전후 사용자의 계약일 중 빠른날)을 이 계약의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계약경과년수를 계산합니다. 단, (신설) 하나은행과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계약서 제18조에 의한 중도해지 및 제19조에 의한 계약이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.

5~8. (생 략)

9. 은행이 운용관리수수료 미납사실을 통지한 이후에도 사용자가 미납된 운용관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, 은행은 미납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미납된 운용관리수수료가 납부될 때까지 일부 운용관리서비스를 일시중지 할 수 있으며, 사용자 및 근로자대표에게 이 사실을 통보합니다. 단, 가입자의 급여지급 신청, 중도인출 지급 신청을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는 업무는 중단하지 않습니다.

10~11. (생 략)

제4조~제5조 (생 략)

제2조 (좌 동)

(별지1) 개인형퇴직연금(기업형) 운용관리계약  
부속협정서

제1조~제2조 (좌 동)

제3조 (수수료의 징수)

① 제2조제1호의 운용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.

1~4. (좌 동)

4의2.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최초로 계약한 날(합병·분사·영업양도의 경우 전후 사용자의 계약일 중 빠른 날)을 이 계약의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계약경과년수를 계산합니다. 이 경우 사용자는 최초 계약일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하나은행과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계약서 제20조에 의한 중도해지 및 제 21조에 의한 계약이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.

5~8. (좌 동)

9. (삭 제)

9~10. (좌 동)

제4조~제5조 (좌 동)

■ 개인형퇴직연금(기업형) 자산관리신탁계약 및 부속협정서 개정(안)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<p>개인형퇴직연금(기업형) 자산관리신탁계약서 (생 략)</p> <p>부 칙</p> <p>제1조 (시행일) 이 계약서는 <u>2019년 11월 15일</u>부터 시행합니다.</p> <p>제2조 (생 략)</p> <p>(별지1) 개인형퇴직연금(기업형)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</p> <p>제1조 (생 략)</p> <p>제2조 (수수료의 징수) ① 제2조제1호의 운용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. 1~4. (생 략) 4의2.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최초로 계약한 날(합병·분사·영업양도의 경우 전후 사용자의 계약일 중 빠른날)을 이 계약의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계약경과년수를 계산합니다. 단, 하나은행과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계약서 제18조에 의한 중도해지 및 제19조에 의한 계약이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.  4~7. (생 략) 8. 은행이 운용관리수수료 미납사실을 통지한 이후에도 사용자가 미납된 운용관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, 은행은 미납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미납된 운용관리수수료가 납부될 때까지 일부 운용관리서비스를 일시중지 할 수 있으며, 사용자 및 근로자대표에게 이 사실을 통보합니다. 단, 가입자의 급여지급 신청, 중도인출 지급 신청을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는 업무는 중단하지 않습니다. 9~10. (생 략)</p>	<p>개인형퇴직연금(기업형) 자산관리신탁계약서 (좌 등)</p> <p>부 칙</p> <p>제1조 (시행일) 이 계약서는 <u>2020년 12월 24일</u>부터 시행합니다.</p> <p>제2조 (좌 등)</p> <p>(별지1) 개인형퇴직연금(기업형)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</p> <p>제1조 (좌 등)</p> <p>제2조 (수수료의 징수) ① 제2조제1호의 운용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. 1~4. (좌 등) 4의2.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최초로 계약한 날(합병·분사·영업양도의 경우 전후 사용자의 계약일 중 빠른 날)을 이 계약의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계약경과년수를 계산합니다. <u>이 경우 사용자는 최초 계약일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</u>, 하나은행과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계약서 제20조에 의한 중도해지 및 제21조에 의한 계약이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.  4~7. (좌 등) <u>8. (삭 제)</u>  8~9. (좌 등)</p>